

현금 보조금 및 CALFRESH 변경사항 신고

사례명:	
사례 번호:	
담당자 번호:	

현금 보조금과 CALFRESH 수혜자는 가족의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10일 이내에 반드시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. 귀 가구의 총 월소득이 귀하의 현재 소득 보고 기준치(Income Reporting Threshold, IRT)를 초과할 경우 언제든지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.

혜택 유형	CalWORKs	CalFresh
가족 수		
귀하의 현재 소득		
귀하의 IRT		

참고: 수혜하는 CalFresh에 대해 귀하의 IRT를 "없음 (N/A)"으로 기재한 경우, 다음 SAR 7 또는 수혜자격 재인증 날짜 중 더 빠른 날짜까지 CalFresh에 대해 소득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러나 CalWORKs에 대해 IRT 금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귀하의 총소득이 그 IRT 금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신고 방법

귀하의 총소득이 위에 기재된 IRT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**10일 이내**에 카운티에 신고해야 합니다. 카운티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면 됩니다.

“월 총소득”의 의미:

- ⇒ (근로소득과 불로소득 포함) 귀하의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.
- ⇒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. (공제의 예: 각종 세금, 사회보장 또는 기타 퇴직 기여금, 차압금 등)

신고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일

- ⇒ IRT 초과 소득에 따라 귀하의 수령 액수가 감액 또는 지급 중지될 수 있습니다.
- ⇒ 귀하의 소득이 변경되거나 누군가 귀 가구로 이사 들어오거나 나가는 경우, 귀하의 IRT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⇒ 카운티는 귀하의 IRT가 변동될 때마다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.
- ⇒ 또한 신고하는 달에 받는 귀하의 SAR 7 전체 소득을 이미 신고한 경우라도 반드시 보고해야만 합니다.

미신고 사항에 대한 처벌

귀하의 소득이 귀 가구의 IRT 한도를 초과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, 혜택을 실제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 추가로 받은 혜택은 **반드시**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. 혜택을 더 받기 위해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는 사기 행위에 해당되며, 그로 인해 형사 기소 및/또는 CalFresh 혜택을 어느 한 기간동안 또는 평생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
현금 보조금 수혜자일 경우, 발생일로부터 **10일 이내**에 반드시 아래 사항도 신고해야 합니다.

1. 자택에 법원에서 말한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법률 위반자가 귀 가구로 들어오거나 현재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
2. 법망을 피해 도주 중인 사람(체포 영장이 나온)이 귀 가구로 들어오거나 현재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
3. 귀하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

CalFresh 수혜자인 경우 반드시 다음 사항도 신고해야 합니다.

- 부양 가족이 없고 신체가 온전한 성인(ABAWD)인 경우 귀하의 근로 또는 교육훈련 시간이 주당 20시간 또는 월 80시간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.

자발적 신고 정보

또한 언제든지 카운티에 자발적으로 변경 사항을 신고해도 됩니다. 일부 변경 사항 신고의 경우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:

- 귀하의 소득이 중단 또는 감소된 경우
-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자택에서 이사를 나가는 경우
-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자택으로 이사를 들어오는 경우
- 가구 구성원 중 누군가 임신한 경우
- 현금보조금 수혜자 중 누군가 다음과 같은 특수 지원을 요하는 경우: 임신, 의사가 처방한 특수 식이요법, 집안 내 비상 상황 등.
- 아기가 태어나는 경우
- CalFresh의 경우, 장애가 있거나 60세 이상인 구성원에게 본인 부담 의료비가 새로 발생하거나 늘어난 경우

참고: 일부 변경 사항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CalFresh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.